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33조의3(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) ① 「주택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<u>사업주체</u>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3조의3(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) ① <u>사업주체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주체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2026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u></p> <p><u>1. 사업주체가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(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</u></p>